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JUVENILE COURT**

**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년법원
처분 심리 후 항소권 통지**

판사 배석 심리 명령

항소 권리 통지 (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 5.590(a))

본 법원은 귀하의 자녀 혹은 자녀들이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 제 300조에 따라 학대 또는 방치 위험이 있는 미성년자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귀하의 자녀 혹은 자녀들에 대한 관할권이 본 법원에 있음을 판결했습니다. 오늘 처분 심리에서 본 법원은 귀하의 자녀가 법원의 피보호자임을 선언하였고 관할권의 지속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항소하려면, 귀하는 명령 발생 후 60일 이내에 항소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 절차 관련 후속 명령에 대해서도 60일 이내에 항소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커미셔너 또는 심판원 배석 심리 명령

재심리 권리 통지 (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 5.540 & 5.542)

만일 귀하의 사건 심리가 심판원 또는 커미셔너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귀하는 심판원 또는 커미셔너가 내린 판결 및 명령에 대한 사본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이 사안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리를 요청하려면 재심리 신청서 및 재심리 명령 및 사유서를 사본 송달 증거물과 함께 10일 이내에 반드시 소년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2층의 서기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리에 대한 재심리를 요청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재심리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은 우편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재심리가 승인되면, 재심리일이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심리가 거부되면, 귀하는 거부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려면, 명령서 사본이 송달된 후 60일 이내, 혹은 재심리 신청 거부 명령이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둘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항소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 권리 통지 (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 5.590(a))

만일 귀하의 사건 심리가 심판원 혹은 커미셔너에 의해 진행되었다면, 귀하는 심판원 혹은 심사위원의 명령이 최종 결정된 후 60일 이내에 그 명령 판결 관할권 및 처분 명령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심리가 승인되지 않는 한, 심판원 혹은 커미셔너의 명령은 그 명령의 사본이 귀하에게 송달된 지 10일 후 최종 결정이 됩니다. 또한, 모든 후속 명령에 대한 항소통지서도 반드시 동일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LOS ANGELES
JUVENILE COURT**

모든 항소 절차

항소통지서는 반드시 상고법원이 아닌 소년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귀하 혹은 귀하의 변호인이 반드시 항소통지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을 경우, 상고법원이 항소심에 귀하를 대변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항소 목적으로 기록의 사본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규칙 5.590(a)(3) & (4)).